

## 『현대사회와 다문화』 간행 규정

2011년 3월 25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현대사회와 다문화』(이하 학술지라 약함)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간행회수 및 간행일) 학술지는 연 2회 발간되며 각 집 1호는 6월 30일, 2호는 12월 31일에 발간한다.

제3조 (게재논문의 내용) 게재되는 논문은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들, 특히 국내외의 다문화, 이주, 소수자 문제에 등에 관한 독창성 있는 내용으로서,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출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국내외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편집과정을 보조하는 편집간사를 둔다.

제5조 (논문원고의 제출 및 판권)

1. 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학회가 별도로 정한 양식의 게재신청서(부록 1)와 원고를 편집위원회에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원고는 파일형태로만 접수하며, 편집위원회는 접수여부를 이메일로 투고자에게 답신하여야 한다.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나, 각 집의 원고 마감은 4월 30일, 10월 30일로 한다.
2. 원고에는 한글초록과 영문초록(Abstract)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각의 초록 말미에는 원고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주제어를 5개 내외로 표기하여야 한다.

3. 원고는 학회가 별도로 규정한 원고작성 방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하며, 게재된 원고의 판권은 다문화사회정책 연구소가 갖는다.
4. 원고의 분량(본문, 각주, 도표, 참고문헌, 한글초록, 영문초록 포함)은 연구작성 방법에 따라 연구논문의 경우 A4 20매 내외로 하며 최대 25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서평의 경우 A4 5매 내외로 한다.

#### 제6조 (논문심사 및 판정)

1. 제출된 원고는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원고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익명의 심사자 3명이 맡는다. 단 편집위원이 원고를 제출한 경우, 해당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익명의 심사자 3명이 맡는다.
3. 원고의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위촉된 심사위원은 해당 원고에 대해 “게재 가”(A), “수정 후 게재”(B), “전면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 중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고, 해당 항목으로 심사한 사유 및 수정 지시사항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5. 심사위원들의 심사보고서를 수합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6. 편집위원회는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① “게재불가”가 결정된 원고는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 ② “전면수정 후 재심사”로 결정된 원고는 해당 호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투고자가 새로이 논문게재신청서와 전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면, 다음 호 발간 시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③ “수정 후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투고자의 수정과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서 게재하도록 한다.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수정된 논문과 수정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정 및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존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마감 날짜까지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호로 게재가 연기될 수 있다.
  - ④ “게재 가”로 결정된 원고는 해당 호의 학술지에 수정 없이 게재한다.

#### 제7조 (원고의 심사료 및 게재료)

1. 원고의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2.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필자는 편집위원회에 소정의 게재료를 지불한다.

## 『현대사회와 다문화』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학술윤리 규정은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현대사회와 다문화』(이하 학술지라 약함)에 기고하는 논문의 저자(이하 연구자 혹은 저자)가 준수해야 하는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의 준수서약)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학술지의 원고 모집을 할 때 연구윤리규정을 공지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연구윤리) 학술지에 기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 작성되어야 한다.

1.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은 독창적인 연구내용을 담은 것으로,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한 사실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①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연구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하는 연구 위조 및 왜곡 행위.
  - ②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적절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 ③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4조 (연구업적의 표기)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를 직접 행하거나 연구에 실질적인 공헌을 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의 공동저자로 참여해야 하며, 공동저자의 표기는 해당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3.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논문의 공동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혹은 적절한 방식의 감사의 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 2명, 편집위원 2명, 그리고 연구소장 및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계의 원로 중에 위촉한다. 간사는 편집간사가 겸직한다.

## 제6조 (연구윤리 심의와 의결)

1.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심의·의결은 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 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3.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된 회의는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4.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징계)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를 결정하며 징계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1. 해당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취소한다.
2.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3.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4.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5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5. 윤리위원회는 제6조에서 정한 심의와 의결 및 제7조의 조치와 징계 관련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 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심사 대상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징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 『현대사회와 다문화』 원고 작성 방법

### 1. 원고 분량

- ① 논문의 분량은 A4 20매 내외로 하며, 최대 25매를 넘지 않아야 한다.
- ② 국문초록은 500자 이내, 영문초록은 400단어 내외로 하고, 주제어(색인어)는 5개 내외로 한다.
- ③ 서평의 분량은 A4 5매 내외로 한다.

### 2. 원고 편집 양식

- ① 원고는 한글(2005 이후 판) 프로그램 또는 MS Word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② 원고 양식은 A4 용지를 세로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 그림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여백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위쪽: 20mm, 아래 쪽: 15mm, 좌측: 30mm, 우측: 30mm
- ④ 글자의 크기는 10, 장평은 100, 글자 간격(자간)은 0, 줄 간격은 160으로 하고, 글자체는 바탕체를 사용한다.
- ⑤ 본문에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될 때에는 한 글자(혹은 두 칸) 뒤로 들여쓰기를 한다.
- ⑥ 쪽 번호는 원고 하단의 중앙에 위치시키며,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 ⑦ 본문의 소재목은 1단계, 2단계, 3단계 순으로 1, 1), (1)로 구분한다.
- ⑧ 영어 논문의 경우 글자크기는 12, 글자체는 Times New Roman, 줄간격은 스페이스로 한다.

### 3. 참고문헌 작성 요령

- ① 본문에서의 참고 및 인용  
참고한 책에 대한 주석은 본문 주로 하며,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를 사용한다.
- ② 본문 주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i. 저술 인용 방식은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연도와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예: (최병두, 2009: 150)

ii. 본문에 저자나 출판연도가 언급되었거나 페이지의 제시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

예: 최병두(2009)

③ 저자의 이름이 외국어인 경우 처음에만 원명을 괄호 속에 넣고, 그 이후에는 한글표기만 한다. 한글표기와 원명 모두 성(姓)만 표기한다.

예: 마르티니엘로(Martiniello)은 …

④ 인용되는 도서명이 여러 권인 경우에는 책이름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하고 가나다순으로 나열한다.

예: (박경태, 2008; 설동훈, 1999)

⑤ 저자가 다수일 경우에 2인까지는 모두 표시하고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만 표시하고 그 외의 저자는 ‘외’ 또는 ‘et al.’로 나타낸다.

예: 최협 외(2004) 또는 Taylor et al.(1994)

⑥ 동명 저자의 서로 다른 연구가 본문에 포함될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출판 연도를 구별하여 표기한다. 저자의 성(姓)만 표기한 서양 문헌의 경우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저자의 성(姓) 앞에 이름의 머릿 글자를 기입할 수 있다.

예: 조은(2009; 2010)는…

예: U. Beck(2004)과 E. Beck(2007)의 연구에서…

#### 4. 참고문헌 목록 작성

①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② 참고문헌 제시 순서는 표기 언어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로마자 표기의 구미어, 기타어(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순서로 배치한다. 한국어 문헌의 저자이름은 가나다 순으로 제시하고, 중국어는 획순으로, 기타 다른 외국어 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표기를 한다.

③ 동일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년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④ 참고문헌에는 진한 글씨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⑤ 참고문헌의 서명, 출판사 등의 사이에는 쉼표를, 마지막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 ⑥ 참고문헌은 내어쓰기 한다.
- ⑦ 저자명이 영문인 경우 성(姓)을 먼저 쓰고 쉽표를 찍는다. 단,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저자명만 이 지침에 따르고 두 번째부터는 영문식으로 표기한다.
- ⑧ 따옴표 다음에 쉽표를 찍는 경우 한글은 닫는 따옴표 뒤에, 영문은 닫는 따옴표 안에 찍는다.
- ⑨ 단행본이나 잡지에 실린 논문은 맨 끝에 페이지를 명기한다. 페이지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줄표를 넣는다.
- ⑩ 참고문헌의 종류에 따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 i. 단행본
 

예: 오경석,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Castles, Stephan and Davidson, Alastair, 2000, Citizenship and Migration: Glob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London: Macmillan.
  - ii. 학술 논문
 

예: 최병두, 2009, 다문화공간과 지구-지방적 윤리: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공간에서 인정투쟁의 공간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635-654.  
Goodkind, Daniel, 1997, The vietnamese double marriage squeez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1), 108-127.
  - iii. 번역서
 

예: Martiniello, Marco, 1997, Sortir des Ghettos Culturels,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윤진 옮김, 2002, 한울.
  - iv. 출판 예정 논문 및 서적
 

예: 출판 예정인 논문이나 서적은 출판 연도 대신 간행 예정이라고 표기한다.
  - v. 학술대회 발표문
 

예: 김혜순, 2009, 정부주도 다문화의 명암: 시혜적 '다문화', 요원한 '다문화사회', 2009년 한국사회학대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611-625.
  - vi. 인터넷 자료
 

예: (사)국경없는마을, 2006, 사단법인 국경없는마을 리플릿, <http://www.bvillage.org>.
  - vii. 신문기사·잡지
 

예: 한겨레, 2010.08.24, 대구이주노동자 57% 최저임금도 못받아.  
New York Times, 1993.06.23, The battered woman,

## 5. 표, 그림, 사례

- ① 표 제목은 표의 위쪽에, 그림 제목은 그림 아래쪽에 넣고 표와 그림은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붙여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이 표기한다.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자료:”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 ② 면접사례 등을 인용할 경우 “사례”라는 글자와 사례 번호를 괄호 안에 넣는다. 이때 “사례”라는 글자와 번호 사이는 한 칸 띄어 쓰고, 마침표는 괄호 바깥에 찍는다. 인용문 및 사례 번호 등은 모두 본문과 같은 글씨체로 한다. 인용문의 글자크기는 9로 한다.





## 현대사회와 다문화 ● 2015년 제5권 2호

발행일 2015년 12월 31일  
역은이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발행인 김선기  
발행처 (주)푸른길  
출판등록 1996년 4월 12일 제16-1292호  
주소 (08377)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48 대륭포스트타워 7차 1008호  
전화 02-523-2907, 02-6942-9570-2  
팩스 02-523-2951  
홈페이지 [www.purungil.co.kr](http://www.purungil.co.kr)

ISSN 2234-1013

※ 본 간행물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앞쪽의 『현대사회와 다문화』 구매 신청 안내를 참조해 주십시오.